

한민족어문학회 심사 규정

제1조 (근거)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회칙 제7장 제18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 위원을 둔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당 해당 영역의 전공자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한다.
2.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심사)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한다.

1. 심사는 논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논리의 정연성, 형식과 체제, 학술적 기여도, 초록의 질적 수준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한다.
 - 게재 결정(5)
 - 수정 후 게재(4)
 - 수정 후 재심(1)
 - 게재 불가(0)
3. 심사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판정 소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심사 결과의 집행)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1. 게재 논문의 결정 및 집행
 - 1)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게재’ 판정을 받을 경우, 무수정 게재를 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수정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시 게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경우 재심사 할 수 있다.
 - 4) 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자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한다.

5) 투고 논문의 게재율은 70% 미만으로 한다.

2. 심사 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를 게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게재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 저작권 양도확인서 양식, 연구윤리
확약서 양식, 논문수정확인서 양식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3) 게재 불가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심사위원 심사서 별첨)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제5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투고자는 재심과 관련된 명확한 사유를 들어 편집위원회로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재심 요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는 논문 심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인~3인의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4) 재심사 이후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정 기간 및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제6조 (심사 결과의 공개)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만 공개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 제외)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의 논문이나 따로 정한 '논문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표절 및 중복 투고)

투고된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 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0조 (저작권재산권의 이양)

투고자는 『한민족어문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작권재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본 학회에 이양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논문 제목						
심사 위원	이 름 : 소속 및 직위 :					
평가	지표 및 등급	A (90 이상)	B (89-80)	C (79-70)	D (69-60)	E (59 이하)
각 항목별로 실점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논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논리의 정연성					
	형식과 체제					
	학술적 기여도					
	초록의 질적 수준					
	총점					
게재 여부	게재() 53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480~529점	수정 후 재심사() 420~479점	게재 불가() 420점 미만		
판정 소견 (최대한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전체 상태						
위와 같이 심사·평가합니다. 심사 위원 : (인)						